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87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박상혁 · 이해식 · 이인영

이연희 · 강훈식 · 한민수

조승래 · 한준호 · 김한규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 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 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 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 등"을 "방법, 제4항에 따른 검사인의 자격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522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자를 말한다)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검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522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
	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검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	<u>⑥</u>
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u>방</u>	<u>방</u>
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법, 제4항에 따른 검사인의 자

로 정한다.	<u>격 요건 등</u>
<u><신 설></u>	⑦ 제4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
	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u> 정한다.</u>